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35
----------	-------

발의연월일 : 2023. 3. 6.

발의자 : 김예지 · 배준영 · 이종배

김선교 · 이명수 · 박덕흠

김석기 · 최연숙 · 구자근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패럴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종목별 전문선수의 우수한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법률안

스포츠클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가목에 따른 <u>지방체육회</u>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 ----- -----<u>지방체육회</u> 또는 <u>지방장애인체육회</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u></p>
<p>4. · 5. (생 략)</p>	<p><u>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u></p>

<p>② · ③ (생 략)</p> <p>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u>지방체육회</u>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 ----- ----- <u>지방체육회</u> 또는 <u>지방장애인체육회</u>--- ----- -----.</p> <p>② (현행과 같음)</p>
--	---